

#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

(나정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478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10. 16.

발의자 : 나정숙 의원 외 9명

## 1. 제정이유

-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.
- 이에 안산시 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증진 및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에 대한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규정(안 제4조)
-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, 신분보장, 요양기관 장의 책무 규정(안 제5조~제7조)
-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(안 제8조~제11조)

## 3. 제정조례안 : 붙임1

## 4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2

## 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3 (비용추계서)

## 6. 입법예고결과 : 붙임4 (의견 있음-미반영)

## 7. 기타사항 : 붙임5 (부서 검토의견서)

## 【붙임 1】

#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장기요양요원”이라 함은 「노인장기요양보보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호에 따라 안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**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
2.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처우개선 사업 등)**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  2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, 조사, 연구 사업
  3.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
  4.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)**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·폭행·성희롱·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)**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**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9조(센터의 기능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리 향상에 관한 사항
2.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, 건강 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3.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4.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
5. 권리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
**제10조(운영의 위탁)**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1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 · 과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나정숙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63)

#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8-478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0월 29일  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회 원장

## □ 수정이유

-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관련 부서에서 내실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립 및 시행시기를 변경하고,
- 시의 재정부담이 많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여 센터 설립 대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

## □ 주요골자

- “5년”을 “3년”으로 변경 (안 제4조)
-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대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 (안 제8조~안 제13조)

# **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5년” 을 “3년” 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8조(위원회 설치 등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제4조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5조의 처우개선 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

제9조의 제목 “(센터의 기능)” 을 “(위원회 구성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 1. 시의회 의원
  2. 장기요양요원
  3.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4.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0조(위원의 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,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11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2조(존속기한)**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제13조(종전의 제11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3조(준용)**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제4조(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</u>  <u>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제8조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</u>  <u>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</u>  <u>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(이하 “센</u>  <u>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</u>  <u>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</u>  <u>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</u>  <u>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9조(센터의 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</u>  <u>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1.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 <u>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</u></p>	<p><u>제4조(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</u>  -----  -----  ----- 3년 -----  ----- 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8조(위원회 설치 등) ① 시장은 다음</u>  <u>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안산</u>  <u>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(이하</u>  <u>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1. 제4조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·시  <u>행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제5조의 처우개선 사업 등 추진에  <u>관한 사항</u></p> <p>3.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  <u>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</u></p> <p><u>제9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</u>  <u>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</u>  <u>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

2.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,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3.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4.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
5.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
<신 설>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의회 의원

2. 장기요양요원

3.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

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<신 설>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제10조(운영의 위탁) 시장은 제8조에 따
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

<p>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 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 다.</p>
<p>〈신 설〉</p>	<p><u>제11조(위원장 등의 직무)</u>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 괄한다.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.</p>
<p>〈신 설〉</p>	<p><u>제12조(존속기한)</u>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</p>
<p><u>제11조(준용)</u>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」 및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	<p><u>제13조(준용)</u>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/p>
<p><u>제12조 (생략)</u></p>	<p><u>제14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</u></p>